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.04.04

3. 정정사항

- 투자신탁 재무정보 업데이트
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[(간이)투자설명서]

	정정요구·						
항 목	명령 관련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			
	여부		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
8. 집합투자기	아니오	기업공시서식	<신 설>	- 주석 추가			
구의 투자대상		작성기준		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			
가. 투자대상		개정사항		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			
[모투자신탁의		반영		<u>방법</u>			
투자대상]				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			
- 유리필라델				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			
피아반도체인				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			
덱스증권모투				<u>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</u>			
자신탁[주식]				<u>을 추구</u>			
				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			
				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			
				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			
				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			
				<u>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</u>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			
10. 집합투자기	아니오	기업공시서식	 <신 설>	- 증권대차 거래위험			
구의 투자위험	이니エ	기합증시시크 작성기준		- ㅎ전대시 기대자 			
가. 일반위험		개정사항		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			
11. 20116		반영		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			
				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			
				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			
				니다.			
14. 이익 배분	아니오	소득세법	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		
및 과세에 관		개정사항	① 세액공제	① 세액공제			
한 사항		반영	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	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			
나. 과세			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	<u> </u>			
			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	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			
			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	 			
			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	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			
			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				
			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	<u>합니다.</u>			
			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				
			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				
			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				



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 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 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 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 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 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| 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 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-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 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 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 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
- 세액공제 [납입금액]
-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 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
-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 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 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
- ③ <생 략> [세액공제]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│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 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 - 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
 - ※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 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 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
 - 세액공제 [납입금액]
 -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

<삭 제>

② <현행 3항과 같음> [세액공제]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│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 | 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 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 │ 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 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│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 |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

			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	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		
			16.5%에 대해 세액공제	16.5%에 대해 세액공제		
			<신 설>	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		
				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		
			- 분리과세한도	- 분리과세한도		
			<신 설>	-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		
				은 16.5% 분리과세 선택가능(2023년		
				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,		
				지방소득세 포함)		
			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	
			<신 설>	연금계좌 가입자가「재난 및 안전		
				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1항제2호의 재		
				<u>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</u>		
				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
1. 재무정보	아니오	정기갱신 및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		
		기업공시서식		(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		
		작성기준		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주석 추가)		
		개정사항				
		반영	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		
1. 집합투자업	아니오	기준일 현재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
자에 관한		갱신				
사항						
다. 최근 2개						
사업연도 요약						
재무내용						

<끝>.